■ 병역법 시행규칙 [별지 제120호서식] <개정 2016. 6. 14.>

제 호

재복무 통지서

인적사항	계급	군번
	성명	생년월일
	주소	
	병적지	
입영부대		
입영일시		
모이는 장소		

「병역법」 제6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을 취소하고 위와 같이 재복무할 것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군참모총장 직인

제 호

재복무 통지서 수령증

인적사항	계급	군번
	성명	생년월일
	주소	
	병적지	
입영부대		
입영일시		

위 사람의 재복무 통지서를 받았습니다.

1. 받은 일시: 년 월 일 시
2. 받은 사람의 주소:
3. 받은 사람의 성명: (서명 또는 인) 본인과의 관계( )
4. 연락장소: (전화:)

유 의 사 항

다음의 경우에는 「병역법」 제85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.

○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

○ 통지서를 대리하여 수령하고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

○ 통지서를 대리하여 수령하고 그 전달을 지체하여 지정된 일시부터 재복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